

무역투자연구 시리즈 07-03

#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인 쇄 2007년 12월 18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인 이 景 台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주)천세: 02) 2272-272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116-8 94320  
978-89-322-2112-0(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조미진·엄부영·박현정

---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9
-----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11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11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11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13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15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16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21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25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25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25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27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31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31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34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38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38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43
제4장.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52
1. 상표권 분야	52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52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55
다. 유명상표 보호	55

2. 의장(디자인) 분야	56
가. 부분의장 보호	57
나. 미등록의장 보호	57
다. 보호기간	58
3. 특허 분야	58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59
4. 집행(Enforcement) 분야	60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60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61
-----	
제5장. 결론	65
-----	
참고문헌	69
-----	
부 록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73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74
3. TRIPs 내용의 요약	75
-----	
Executive Summary	97

## 표 차례

---

표 2-1. TRIPs의 필수규정	19
표 2-2. 지식재산권 조화의 유형	22
표 3-1.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26
표 3-2.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32
표 3-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비교	43
표 3-4. 우리나라 FTA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항 구성	45

## 그림 차례

---

그림 4-1. 한국의 상표등록	53
그림 4-2. 국가별 중국 전리출원 현황	59

## 글상자 차례

---

글상자 2-1.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17
글상자 4-1.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특징	63



# 제1장

---

## 서론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동시에 한국의 해외 생산기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투자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2006년 양국간 무역 총액은 1,18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2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 투자액이 2006년에만 33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심화됨에 따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sup>1)</sup>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양국간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2월 현재 2년간의 민간공동연구는 종료되었고,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1년간 한·중 FTA의 타당성에 대해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공동연구에서는 거시경제효과, 투자효과 및 양국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일

---

1) 이장규 외(2006) 참고.

부 산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비하여 핵심 쟁점을 미리 점검해 보고자 한다.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조화의 움직임은 기존의 WIPO 혹은 WTO/TRIPs를 통한 국제적 보호의 움직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도하에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선진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대가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지식재산권 협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그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는 FT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달라 ‘협정’마다 협상에 임하는 전략과 의도가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을 상대로 소극적인 전략<sup>2)</sup>을 취해 왔고, 최근 타결된 한·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미국측의 공세에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대중국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국제무역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와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 현황을 비교하고, 제4장에서는 양국간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을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2) TRIPs를 최소요건으로 자국법을 통해 관련 협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가능토록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p. 11과 pp. 28~31 참고).

# 제2장

---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권 보호는 각국의 국내산업 및 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보호형태와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FTA를 통한 무역 체제의 개방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이한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로 인한 지식재산권 관련 통상문제가 빈번해지면서 지식재산권의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와 무역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국가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경

제활동에 상당한 왜곡이 초래되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왔고,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 연구의 초점은 바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과 FDI, 무역, 경제성장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수준 강화에 관심을 가지는 미국 등 선진국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개도국들 역시 무역 및 투자 증대와 기술이전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들 관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이 없다. 이는 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강화에 따른 영향력 평가가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정도뿐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특성 및 산업적 특색에 따라서도 달라져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uld and Gruben(1993)는 개방경제일수록 지식재산권과 혁신(innovation) 간의 관계가 강화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엔진이 된다고 하였다.<sup>4)</sup> Mansfield(1994)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기술개발과 관련된 설비에서 FDI 혹은 연구합작기업(RJV: Research Joint Venture)의 설립이 쉽지 않음을 보였고, Maskus(1998)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미국의 outward FDI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3) 이 외에도 시장규모, 모방생산(imitative production)의 효율성, 무역장벽의 구조 및 독과점 시장구조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정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적정수준 이상의 보호로 생산자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지나치게 커져 오히려 FDI 혹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에 이르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 중 몇몇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이윤을 얻기 위해 R&D에 대한 지출을 한다. 한편 새로운 상품에는 인적지식(human knowledge)이 축적되어 갈 것이고, 혁신에 대한 비용은 인적지식이 축적될수록 낮아지게 된다. 결국 경제성장의 속도는 새로운 상품이 새로이 등장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인적지식이 축적될수록 더 빨라지게 된다. 인적지식의 축적에 유의한 환경이 바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적절하고 충분히 보호되는 환경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Gould and Gruben 1993, p. 328).

것을 보였다. Smarzynska(2000)는 실증분석을 통해 약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지식재산권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가 무역과 FDI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이 촉진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교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중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쯤 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와 무역에 관한 국내 실증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통해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효과는 수입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면 지식재산권을 가진 수출기업은 시장지배력이 향상되어 생산량(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를 ‘시장지배효과(market power effect)’라 한다. 둘째, 수입국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은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경쟁우위를 가지므로 수출시장에서 생산량(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시장확대효과(market expansion effect)’라 한다. 결국 이들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한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는 그 국가로의 수출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도 있다. 결국 지식재산권 보호수준과 무역과의 상관관계는 실증의 문제(empirical question)가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연구<sup>5)</sup>는 매우 활발한 반면, 국내연구는 오근엽·원종익(2005)과 강호진·박건영(2006)을 제

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먼저 오근엽·원종익(2005)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수출에 한해 수입국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를 강화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특히 경제발전 단계가 높고 모방 능력이 강한 국가들일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강호진·박건영(2006)은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교역 상대국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교역상대국과 산업을 구분한 분석의 결과에서는 주로 개도국에 대한 수출과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의 수출에서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비록 제한적이거나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가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며, 교역 상대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인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는 우리나라의 수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규모(GDP 총액)는 2006년 기준으로 세계 4위(2조 6900억 달러)이며 수출은 세계 3위(9693억 달러)이다. OECD가 발표한 세계과학기술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R&D 지출은 1,363억 달러로 일본을 추월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R&D 종사자 수는

5) 주요한 연구결과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skus and Penubarti(1995)는 '시장확대효과'가 '시장지배효과'보다 커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무역이 증가됨을 보였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개도국에서는 그 효과가 작고 시장지배력 효과로 인해 무역이 감소하기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Smith(1999)는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기업이 기술력을 모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기술력을 모방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장지배효과'가 커져 오히려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Carsten and Braga(1999)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강화가 무역 증가를 초래함을 보였다.

92만 6,000명에 달해, 미국의 130만 명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으로 중국 내부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수요증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모조품 공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중국 내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1990년대 이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 특징적인 점은 WTO/TRIPs와 같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협상접근(Multilateral negotiating approach)’ 방식<sup>6)</sup>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해당 회원국 간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핵심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FTA 협상은 몇몇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때로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의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어 ‘지역협상접근(Regional negotiating

---

6)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수의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외부성(externality)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적으로 개별국가의 재량에 맡기게 되면,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권제도로 인해 기술의 국가간 확산(International spillover)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혁신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조치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Maskus 2000).

approach)’ 방식의 유효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자간 협상 접근방식과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TRIPs 협정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본 협정의 보호수준을 최저수준으로 하고 개별 체약국의 국내법의 재량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150여 개 국가가 WTO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TRIPs를 통해 최소보호기준(the minimum standards of protection)이 설정되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TRIPs 이전의 지식재산권 국제적 보호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가 관장하는 국제협약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별 국가의 가입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결정되었다.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조화와 통일에 있어 관련 국제협약이 많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RIPs 협정이 체결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국제협약에서는 지식재산권 집행을 개별 체약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과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있어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집행을 강조하여 집행(Enforcement, TRIPs 제3부)과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TRIPs 제5부)을 명시하고 있다.

## ■ 글상자 2-1.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UN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1967년에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인되어 1970년 4월 26일에 발효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WIPO의 시발은 1883년에 체결된 파리협약(특허·상표·의장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설정)과 1886년에 체결된 베른협약(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설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 협약의 운영을 위해 두 개의 국제사무국(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두었으며, 이들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었다. 이후 1893년에 두 국제사무국은 통합되었으며 BIRPI(지적소유권보호국제합동사무국)가 설치되었다. BIRPI의 후신인 WIPO는 1974년 12월 17일에 UN과의 협정에 따라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WIPO의 조직은 총회(General Assembly), 계약국회의(Conference),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WIPO)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WIPO의 기본활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록활동', '지식재산권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 그리고 '실체적 혹은 계획적 활동'이다. 이 중 가장 중요시되는 활동이 바로 '실체적 혹은 계획적 활동'으로, 이는 기존의 조약에 대한 가입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조약을 포함하여 조약의 개정을 통해 조약을 갱신하는 것과 개발협력 활동을 주관하고 참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교육·문화 등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UN 산하기구이다. UNESCO는 세계저작권협약(UCC, 1952), 로마협약(1961), 제네바협약(1971), 브뤼셀협약(1974), 마드리드협약(1979) 등의 협약을 수용하는 한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저작권정보센터(ICIC)도 운영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1997); 조영정(2003).

TRIPs 협정은 총 7부 73개의 조항(7)으로,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7) TRIPs 협정 자체는 73개 조항에 불과하나 기존 국제협약-plus 방식(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직 접회로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약을 준용)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내

제2부 보호기준, 제3부 집행절차, 제4부 권리의 획득·유지·관련 내부 절차, 제5부 분쟁방지 및 분쟁해결,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도관련규정 및 최종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RIPs가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분야인 저작권과 인접권, 상표(서비스표 포함),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새로운 변종식물 보호 포함), 직접회로의 배치설계 및 미공개정보 등을 제2부 제9-40조에 걸쳐 규율하고 있다.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일반적 의무(제41조), 민사 및 행정절차(증거제출 및 절차, 금지명령, 손해배상, 기타구제, 정보권)와 구제(제42-49조), 잠정조치(제50조), 국경조치(세관당국에 의한 통관정지, 신청, 예치금 또는 공탁금, 통관정지기간,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직권조치, 최소허용수입량, 제51-60조) 및 형사절차(제61조),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제62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제63~64조)에 있어서는 TRIPs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GATT 제22조, 제23조 및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에 의해 처리함을 명시하고 있다.<sup>8)</sup>

TRIPs 협정의 일반규정으로는 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 투명성원칙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내국민대우원칙은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최혜국대우원칙은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원칙은 국제통상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으로 개별 회원국의 법이나 제도의 운영이 투명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8)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3] 참고.

표 2-1. TRIPs의 필수규정

일반규정 (General Obligation)	1. 내국민대우 2. 최혜국대우 3. 투명성
저작권과 인접권	4. 베른협약 준용 5. 최소 50년 보호 6. 어문저작물로 프로그램 및 데이터컴파일 보호 7. 음반제작자 및 실연가에 대한 인접권 보호 8. 임대권
상표	9. 파리협약 준용 10. 유명상표 보호 강화 11. 비사용(non-use)의 명확성 확보(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12.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금지 13. Industrial design
특허	14. Subject matter coverage(모든 기술영역에서의 products와 process가 특허대상임을 의미) 15. Biotechnology(동식물에 허용된 예외를 제외한 생명공학) 16. Plant breeders' rights(식물품종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체계(sui generis system)가 필요함을 의미) 17. 수입의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of importation) 18. 강제실시에 대한 강력한 제한 19.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 보호 20. 제법특허상의 입증책임 전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21. 침해된 설계를 포함한 품목의 보호연장 22. 최소 10년 보호
미공개정보 보호	23. 불공정공개에 대한 영업비밀(trade secrets)
IPRs의 남용	24. 경쟁적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경쟁정책에 대한 폭넓은 한도
시행조치	25. 민사, 형사 및 국경간 절차 필요
이행협정	26. 유예기간(개도국은 5년, 최빈국은 11년 인정) 27. 제약산업의 Pipeline 보호
제도적 협정	28. TRIPs Council 29. 분쟁해결(standard approach with 5-year moratorium in some cases)

자료: Maskus(1997, p. 685).

[표 2-1]에는 TRIPs 협정 일반규정을 비롯하여 저작권, 인접권, 상표, 특허, 직접회로의 배치설계, 미공개정보 보호, 지식재산권의 남용, 시행조치, 이행협정(Transitional Agreements) 및 제도적 협정(Institutional Agreements)의 관련 TRIPs의 필수규정이 요약되어 있다.

이상의 필수규정에 따라 WTO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을 TRIPs 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sup>9)</sup>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대부분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및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 보호, 유명상표보호, 강제실시의 제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규정 및 국경간 시행조치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이 자국 법률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추가적인 위반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TRIPs 협정의 이행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게 되므로 이들 국가간 공통의 이해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TRIPs협정과 같은 국제적 규범설정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보호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선진국으로부터 FDI와 기술을 유인하는 데 있어 TRIPs를 통한 최소한의 보호와 규율이 개별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TRIPs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규정 적

---

9) TRIPs 협정 제64조에 따라 선진국은 1996년부터, 개발도상국은 2000년부터, 최빈개도국은 2005년부터 협정을 이행하도록 과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과도기간이 끝나면 협정이행을 완료했음을 다자차원에서 확인받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법령을 TRIPs 이사회에 통보하고, TRIPs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아 2000년부터 TRIPs 이행의무가 발생, 싱가포르, 홍콩, 멕시코 등 12개국과 함께 2000년 6월 TRIPs 이사회에서 법령검토를 받았다.

용 지연 및 예외조항 해석에 따르는 유연성(flexibilities)으로 인해, TRIPs를 통해 설정된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 자체가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는 TRIPs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국가간 발전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서로의 입장 차이도 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지역협상 접근 방식의 경우, FTA 협상국만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조화(harmonization)를 논의하므로, 실질적으로 TRIPs보다 협상기간이 짧고 합의 달성이 용이하여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은 FTA를 적극 활용,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개도국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염두해 두면서 다음에서는 지역협상 접근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FT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가 ‘협정’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다자협상 접근방식과 구분된다. 이는 FTA에 참여하는 협상 국가별 보호수준이 달라 그에 따른 전략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는 지식재산권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 협정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집행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된다. 일례로 NAFTA를 통해 미국은 멕시코에 국경조치를 통한 통관보류, 형사 및 민사상의 제재조치 등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집행체제 구축을 요구하였다. 이와 달리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정보 및 인재 교류, 교육연수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

화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TRIPs 협정의 원용 정도, WIPO가 권장하는 국제협약 등의 활용 여부, 별도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내용, 특정 유예기간의 단축 여부, 집행 및 집행관련 협력(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 포함) 등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FTA 협정문에 얼마나 구체화되는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 정도를 EU 방식, NAFTA 방식, TRIPs-plus 방식 및 상호권고 방식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 주요 특징은 [표 2-2]와 같다.

▮ 표 2-2.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 유형 ▮

유형	주요 특징
EU 방식	완전한 조화추구방식으로 해당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일한 표준의 채택 요구
NAFTA 방식	TRIPs 이상의 보호기준 요구 (지식재산권의 동조화(harmonization)를 달성하지는 않음)
TRIPs-plus 방식	기존의 TRIPs 협정의 충실한 이행 및 TRIPs 협정에서 포괄하지 못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보호대상을 규정
상호권고방식 (mutual exhortation)	지식재산권 관련 공식적인 협상 없이 개별 국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절차에 대해 상호간의 권고함

자료: Maskus(2000); 이 근(2003, pp. 200~201).

상당수의 FTA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TRIPs-plus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TRIPs-plus 방식은 TRIPs를 최소요건으로 하고, WIPO가 권장하는 지식재산권관련 국제협약 등 각종 기존 국제협약을 활용하는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바로 회원국에게 특혜조치(preferential treatment)를 제공함으로써 비회원국과는 차별하는 것으로, FTA 체결에 따르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 ‘무역전환(trade diversion)’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협상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 창출(IPR creation)’과 ‘지식재산권 전환(IPR diversion)’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sup>10)</sup> 전자는 FTA 체결에 따르는 시장 확대와 비효율적인 기술제공자를 효율적인 기술제공자로 바꾸면서 FTA 내 통합시장에서 더 많은 지식재산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비회원국의 지식재산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비회원국의 지식재산 사용 감소는 이들 국가 기업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나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에서 비회원국 기업 제외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위의 효과들을 감안해 볼 때 먼저 FTA의 체결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강화된다면 해당 회원국들에게는 R&D에 대한 유인이 제공되고, FTA 내 통합시장에서는 혁신제품이 개발될 가능성 역시 높아져 장기적으로 회원국들의 이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개별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점차 상이해짐에 따라, TRIPs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 움직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재 유럽에서는 EU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NAFTA를 필두로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등 다수 국가와의 FTA 체결로 다양한 보호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 보호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이제는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로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우리의 주도하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협상의 주목적이 될 것임을 예상

---

10) Maskus(1997) 참고.

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를 위한 준비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추후 협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 제3장

##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지식재산권 제도는 실제 많은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법률은 잦은 제정과 개정을 통해 변화한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담당 행정기관 및 관련법의 제·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현황과 기 체결된 FTA 협정문의 지식재산권 조항 분석을 통해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sup>11)</sup> 신지식재산권<sup>12)</sup>으로 구

분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및 기타 영역<sup>13)</sup>으로 세분화된다. (표 3-1 참고)

표 3-1.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관련기관	
전통적 지식 재산권	산업 재산권	특허권	발명	특허법	특허청
		실용신안권	실용성 있는 개량기술	실용신안법	특허청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디자인법	특허청
		상표권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	상표법	특허청
	저작권	협의를 저작권	문학, 예술적 저작물	저작권법	문광부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권리		
신지식 재산권	협의를 신지식 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반도체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반도체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농림부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청 정통부
		정보재산권	멀티미디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기타 영역	지리적 표시	특정상품이 생산되는 지역명칭	상표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포장제도)	특허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제청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캐릭터, 상표권의 보호대상 확대, 디자인권의 보호대상 확대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11) 산업재산권은 법정의 요건 심사에 따른 행정관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의 경우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창작에 의해 권리가 발생되지만 추가적인 보호 획득을 위해 등록절차가 활용되고 있다.
- 12) 신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 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뜻한다(특허청 웹사이트 참고, [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html,HtmlApp&c=3003&catmenu=m03\\_02\\_01\\_03](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html,HtmlApp&c=3003&catmenu=m03_02_01_03)).
- 13) 기타 영역에는 프랜차이징, 지리적 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색채·입체 상표, 그리고 맛·소리·냄새 상표가 포함된다.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는 부처간에 산재되어 있다. 우선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및 보호는 산자부 산하기관인 특허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등록을 담당한다. 그리고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등록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협력 및 집행도 특허청 관할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에도 관여하는데, 분쟁 발생 시 이를 본청 소속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통해 해결한다. 만약 관계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며, 차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의 저작권심의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을 담당, 분쟁 발생 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S/W)은 정통부가 담당하고, 식물신품종은 농림부, 지리적 표시는 농림부, 해양수산물 및 국제청, 그리고 전통지식은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

####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1960년대 일본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형성, 유지되어 오다가,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및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1985년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상과 1990년대 WTO TRIPs 및 WIPO 관련 협약의 가입을 거치면서 현재에는 국제표준과 상당히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sup>14)</sup>

---

14) WTO 지식재산권 당국은 2004년 TPR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이 WTO/TRIPs 협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 1) WTO/TRIPs 협정 가입 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을 규정, 불특허대상 발명과 특허권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7년으로 하고, 3년 이상 불 실시 시 적용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선사용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와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도를 규정하였다. 실용신안법의 경우 존속기간을 12년으로 하고, 특허·실용신안·의장 출원 간에 변경출원을 인정하였다. 의장법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 의장의 불가분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였다.

1980년에는 파리협약 가입과 함께 특허법에 내국민대우 및 우선권주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허 청구범위다항제,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및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표법에서는 단체표장제도와 우선권주장제도를 신설하였다. 1984년에는 특허협력조약<sup>15)</sup>에 가입하였다. 한편 1985년 미 통상법 301조가 타결됨에 따라 특허법에서 의약 혹은 의약제조방법의 발명, 물질 혹은 물질용도 발명을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실용신안법에서는 12년 권리 존속기간의 단서규정을 삭제, 의장법에서는 상표사용권의 설정 자유화 및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1986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지식재산권 전반이 개정되었다. 특허법에서는 음식물·기호물 발명을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우선권제도를 도입하였으

---

15) 한국 특허청은 1997년 9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부터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 11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중 하나로써, 국제조사업무량이 단기간 내에 6위로 급증, 세계 유수의 특허청으로 부상하였다.

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였다. 실용신안법의 경우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의장등록요건의 국제공시주의를 채택하였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함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시켰으며, 1992년에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관련 권리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였다. 1993년 특허법 개정으로 ‘공업소유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우선심사대상을 출원공개 이후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 2) WTO/TRIPs 협정 가입 후

1994년 WTO/TRIPs 최종협정이 체결되고 1995년 1월 1일 WTO/TRIPs 협정이 발표됨에 따라, 1995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등 4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1996년에는 새로운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법 및 관세법이 시행되었고, 상표법에 색채의 보호나 표지, 캐릭터, 형상 혹은 이들의 결합과 색채상표 결합의 보호가 도입되었다.

1997년에는 상표법이 개정되어 한국에서 등록된 3차원 상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였다. 또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으로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침해 벌금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변경하였다. 의장법에서는 권리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의장 일부 무심사등록제도<sup>16)</sup>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및 다의장 1출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상표법의 경우 입체상표제도 및 다류 1출원제도<sup>17)</sup>를 도입하였으며, 연합상표제도와 상표등록 갱신출원의 실제심사제도 및 상표권 이전공고를 폐지하였다.

16) 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17) 1997년 상표법 개정으로 1상표 1류 1출원주의를 폐지,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3월 개정된 상표법이 발효되었는데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특허법원이 설립되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1999년 1월에는 오랜 기간의 임상실험 및 국내 시험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 특정 의약품, 농화학품 및 동물 건강 물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특허법에 제정 발효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와 함께,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및 가입준비의 일환으로 기존 조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법조항이 대폭 수정되었다.<sup>18)</sup> 2000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으로 권리자가 복제방지를 위해 장치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제거, 회피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행위를 금지하고, 정통부 관계공무원에게 불법복제단속권을 부여하였다.

2001년 1월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벌금과 형량을 강화시켰는데, 종전에 5년의 징역 및 5,000만 원의 벌금에서 7년 징역 및 1억 원의 벌금으로 증가시켰다. 동년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와 ‘상표법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 내국인의 상표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손실보상청구권 제도를 신설하였다. 2002년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온라인 디지털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관광부에 저작 서적의 불법 복사물을 검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부여되었다. 2003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

18)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창작물보호를 통한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열강에 의한 시장지배의 일환으로 외국인 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되었다. 한편 우리의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일본의 1877년 저작권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 후 1986년 전면적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이후 여러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일부 조항이 개정되는 형식으로 변천해 왔다(김종보 2005).

호 및 온라인서비스자의 책임제한을 신설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WCT<sup>19)</sup>에 가입, 10월부터는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음반제작자와 실연가에 전송권<sup>20)</sup>을 부여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 시행된 디자인법에서는 ‘의장’을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 글자체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디자인 등록요건 중 창작성을 강화하고,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행사를 제한하였다.

최근 이루어진 2006년 개정에서는 유·무성에 관계없이 모든 식물발명이 특허 대상화되었으며, 이종출원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가 도입되고 기존의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되었다. 아울러 1999년 신설되었던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2006년에는 기존의 방송과 전송 외에 공중송신권과 디지털음성송신권을 신설,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PPT) 가입을 고려해 실연자의 인격권 및 생실연권을 신설하고, 음반제작자 보호시기를 음반을 ‘고정한 때’에서 ‘발행한 때’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존속되고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에 대한 인접권 역시 5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19) WCT(1996)는 인터넷에도 저작권을 적용할 것을 명시,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여권에 관한 조항을 TRIPs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0) 동 법률은 주문에 따른 다운로드 웹사이트에서 복제물을 게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녹음을 가능하게 통제한 ‘쌍방향’ 전송권을 음반 제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권리(영업비밀, 반도체직접회로 배치 설계권, 식물육종권)<sup>21)</sup>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지만, 중국에서는 발명특허,<sup>22)</sup> 실용신행특허, 외관설계특허, 상표로 구분된다. 이 중 발명특허, 실용신행특허, 외관설계특허 등 3가지를 전리(專利)라고 부른다(표 3-2 참고).

표 3-2.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담당 행정기관
산업 재산권	전리권	발명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제품의 형상, 도안, 색채 등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물건에만 해당)	전리법 (專利法)	국가지식산업권국 (國家知識產權局 SIPO)
	상표권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단체표장	상표법	상표국 (商標局, SAIC)
저작권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작품,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국가판권국 (國家版權局 NCAC)
기타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Client 정보	부정당 경쟁방지법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 (國家工商行政管理 總局, 공상총국)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권	반도체직접회로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국가지식산업권국 (國家知識產權局 SIPO)
	식물육종권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국가농업부 (國家農業部)

자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1) 기타 권리와 관련된 보호법령으로는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권은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보호조례」, 식물육종법은 「식물신품종보호조례」가 각각 해당된다.

22) 우리나라에서 특허라고 명칭하는 것은 중국의 발명특허에 해당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23)</sup> 중앙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기관으로는 국무원 산하의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 SIPO)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약칭 공상총국) 내의 상표국(商標局: SAIC),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NCAC), 해관총서(海關總署)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관리기관으로는 지방전리관리기관(地方專利管理機關)과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地方工商行政管理機關)이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청(KIPO)에 준하는 기관이다.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특허국(專利局)이 확대·개편되어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 등의 출원, 심사 및 등록,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법률 초안 작성 및 규칙 제정, 지식재산권 관련 외국과의 협상 및 협력 등을 맡고 있다.

상표권은 공상총국 산하의 상표국에서 주관한다. 이는 중국의 상표권 보호가 상표권자의 재산권 보호수단이기보다는 시장질서 유지수단으로 다루어지는 측면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및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up>24)</sup>의 심사 및 등록, 상표등록의 변경·양도·갱신·취소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상표국은 상표침해 및 모방사건을 조사·처리하며, 지방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상표권 처리업무를 조정·지도한다. 이 외에도 상

23) 장동식(2006) 참고.

24) 조합, 그룹, 연합체, 협회 등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단체표장이라 하며, 증명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재질, 제조방법, 특징, 규격, 품질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검정회사, 공익기관이 사용하는 상표로, CONAC, UL(Underwriter's laboratories), APL(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등이 그 예다. 또한 무공해식품 등에 붙이는 환경마크제도를 증명표장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표대리기구의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유명상표를 확정·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공상총국 산하에는 상표평심기구로서 상표평심위원회가 있는데 상표 분쟁업무를 주관하고, 그 소속의 공평거래국은 상업비밀침해행위와 위조, 불법복제 및 기타 부정경쟁행위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이 밖에 저작권관리 업무는 1985년에 설립된 국가판권국(NCAC)<sup>25)</sup>에서,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국경에서 집행하는 주관기관으로는 해관총서<sup>26)</sup>가, 가짜 상품의 품질 및 위생 관련 문제는 국가질량감독검역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서 맡고 있으며, 세관(海關)과 공안부(公安部), 상무부(商務部) 등이 지식재산권 보호 권한을 나누어 갖고 있다.

지방행정기구인 지방전리관리기관은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sup>26)</sup>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리관리국과 전리관리처를 의미한다. 지방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과 성 이하 지구 및 시·현의 공상행정관리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 배상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벌금부과와 침해제품의 압수권을 가지고 있어 경제경찰관의 기능을 담당한다.

##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 1) WTO 가입 이전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이다. 1979년 중국과 미국이 대외무역을 정상화하면서 미

25) 국가판권국은 전국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 부분의 업무를 지도하고 저작권 전체관리기구, 섭외대리기구의 설립을 비준·감독하고 기타 업무를 지도한다.

26) 중국의 '성'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되며, 중국의 '직할시'는 우리의 '광역시'에 해당된다. 중국에서는 '성', '직할시', '자치구'가 동급의 행정단위이며 현재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닝샤회족자치구, 티베트자치구) 및 4개의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가 있다.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것이 시초였다. 즉 중국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소비시장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호장치가 단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80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전리국이 성립되었고, 1983년에 상표법이, 1984년에는 특허법(전리법)이 제정되어 19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0년에 저작권법<sup>27)</sup> 1993년에 영업비밀(불공정 거래에 관한 법)에 관한 법령들도 차례로 만들어졌다. 또한 1993년에는 특허의 보호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등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 2) WTO 가입 이후 개선 상황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은 TRIPs 협정의 규정에 맞춰 수정되었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sup>28)</sup>과 함께, 2001년 10월에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규정」과 「집적회로 배치설계 규정에 대한 시행 규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수준을 크게 높여왔다. 이어 2002년 12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이, 2002년 9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가 시행되어 기존 법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개정이 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2년에 베른조약과 세계저작권협약, 1993년에 제네바협약에 차례로 가입하면서 다수의 행정법규가 제정되었다.

28) 개정된 특허법은 2001년 7월, 상표법 2002년 말, 저작권법 2000년 9월에 시행되었다. 제2차 특허법에서는 TRIPs 28조, 31조, 44조에 의거하여 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상표법에서는 등록 가능 대상에 단체표장, 3차 심벌을 추가하고 저명상표(馳名商標)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었다. 저작권법 역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에서의 합법적 이익까지 보호하였다(2001년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월라 외(2006, pp. 133~134 참고).

첫째, 상표법 분야에서는 2004년부터 유명상표(Well-known Mark, 馳名商標)에 대한 보호가 중국기업뿐 아니라 외자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Dupont, Rolex, Gillette, Sprite, LANCOME, Wal-Mart, Wrigley's, PHILIPS, Honeywell, Nissan, YKK, De Beers, YSL(Yves Saint Laurent), SHANGRI-LA 등 9개 국가의 30개 외국 브랜드<sup>29)</sup>가 유명상표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중국 내 상표출원 증가로 심사받지 못한 상표의 출원건수도 늘어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상표평가심사규칙><sup>30)</sup>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상표의 평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둘째, 저작권 분야에서는 행정법규, 세부규정, 사법해석이 강화되었다. 행정법규의 경우 「저작권 단체 관리조례」<sup>31)</sup>와 「인터넷(미디어) 저작권보호 조례」<sup>32)</sup>가 제정되었고, 세부규정으로 「인터넷 저작권 행정보호 방법」<sup>33)</sup>, 「컴퓨터 정품 운영시스템 사전 설치문제에 관한 통지」<sup>34)</sup>, 「저작권침해 위법행위 단속활동의 협력강화에 관한 잠정규정」<sup>35)</sup>이 제정·시행되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인터넷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적용 법률에 관한 해석」<sup>36)</sup>과 이 사법해석에 대한 수정결정<sup>37)</sup> 등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다. 한편

29) 미국 13개, 프랑스 5개, 네덜란드 3개, 영국 2개, 스위스 2개, 일본 2개, 독일·이탈리아·영국령 버진군도 각 1개로, 9개 국가 30개 브랜드이다.

30) 商標評審規則, 2006년 1월 1일 시행.

31) 著作權集體管理條例, 2005년 3월 1일 시행. 저작권 보유자가 자격 있는 단체에게 권리행사를 위임하여 관리하기 위한 규정임. 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에는 연출권, 방영권, 방송권, 임대권, 인터넷 정보 전파권, 복제권 등이다.

32) 信息网络傳播權保護條例, 2006년 7월 1일 시행. 중국은 WCT와 WPPT에서 창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인터넷 정보권'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33) 互聯網著作權行政保護辦法, 국가판권국과 신식산업부 발표, 2005년 5월 30일 시행.

34) 關於計算機預裝正版操作系統軟件有關問題, 국가판권국, 신식산업부, 상무부 공동발표, 2006년 3월 30일 시행.

35) 關於在打擊侵犯著作權違法犯罪工作中加強銜接配合的暫行規定, 공안부, 국가판권국 발표, 2006년 3월 30일 시행.

36) 最高人民法院關於受理涉及計算機網絡著作權糾紛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2006년 11월 20일 시행.

WCT와 WPPT 가입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인터넷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규정 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셋째, 세관조치와 관련하여 중국 해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도 강화되었는데, 2004년 중국 해관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조례」<sup>38)</sup>를 개정하여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조례의 실시방법」을 2004년 5월에 제정하였다.

넷째, 중국은 대형 국제전시회 개최가 늘어남에 따라 전시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방법」<sup>39)</sup>을 시행하였다. 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회 개최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전시회 개최 측은 수요에 따라 지식재산권 고발센터를 설치하게 되며, 전시회 참가업체가 2회 이상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다음 회 전시회 참가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회 기간 내 처리되지 못한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전시회 종료 후 15일 내에 전시회 주체 측의 확인을 거쳐 전시회 개최지 지식재산권 행정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 적용법률에 관한 해석」<sup>40)</sup>을 공포(2004년 12월 22일 시행)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최소 피해규모를 낮추었다.<sup>41)</sup>

37)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计算机网络著作权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决(二), 최고인민법원 공고, 2006년 11월 22일 시행.

38)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39)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2006년 3월 1일 시행.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판권국, 국가지식재산국 공동 발표.

40) 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侵犯知识产权刑事案件具体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41)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개별법과 더불어 국가 행정기관과 주관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행정법규, 부문규장(部门规章), 최고사법기관의 사법해석, 지방정부의 지방성 법규(地方性法规)도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

한편 2007년 3월 현재 특허법의 3차 개정을 진행 중인 중국은 이번 개정  
에 지식재산권 남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할 방침을 밝히고 있  
는데, 이는 중국 내 외자기업에 대한 경계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외  
자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방패막으로 삼아 중국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가의 제품  
을 판매하거나 끼워 팔기를 하고, 동종 산업 내 타사에 대한 특허 사용을 불  
허하는 등 중국시장을 독점하여 중국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본 절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과 기 체결된 FTA 협정  
문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파악  
하고자 한다.

#### 가. 국제조약 가입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 1)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분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국  
제협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가)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특  
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마드리드의정서  
(Madrid Protocol), 상표법조약(TLT), 니스협정(Nice Agreement), 스트라  
스부르크협정(Strasbourg Agreement), 로카르노협정(Locarno Agreement)

및 특허법조약(PLT) 등이 있다.

-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최초 협약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상호, 원산지표시 및 부정경쟁방지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내국민대우, 우선권제도 및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 국제특허의 출원관리상 협력을 위한 특허협력조약(PCT)은 동일발명을 각국에 중복출원하고 각국이 독립해서 심사하는 데 드는 낭비와 불편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도입된 조약<sup>42)</sup>으로,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국제상표등록제도는 마드리드협정과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마드리드의정서는 탄력적인 국제상표등록제도 창설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 희망 국가를 지정, 출원서를 자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등록을 원하는 모든 국가에 자동적으로 출원된다. 한편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여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면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상표법조약(TLT)은 세계 각국 및 지역의 상이한 상표등록제도를 통일화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도록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

---

42) 국제특허출원제도가 바로 PCT에 기초한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 특허출원을 원하는 경우 하나의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해당 국가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국가에서도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으로 채택된 조약으로, 상표등록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 등록 후 변경, 갱신 등 3가지 단계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특허법조약(PLT)은 국제공통의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하나로, 각국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로 출원인에게 일관되고 간소한 특허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된 조약이다.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이 논의 중에 있다.
- 이 밖에 식물의 신품종 보호<sup>43)</sup>를 위한 조약인 UPOV, 산업의장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로카르노협정, 특허에 관한 발명과 기술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스트라스부르크협정 등이 있다.

#### 나)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저작권 분야의 국제협약으로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세계저작권협약(UCC), 로마협약(Rome Convention),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WIPO 저작권조약(WCT), 그리고 WIPO 연주 및 음반조약(WPPT) 등이 있다.

- 베른협약은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국제협약으로, 저작권 관련협약 중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자 사후 50년이다. 내국민대우, 무방식주의(principle of automatic protection)와 협정에서 정하는 최소보호기간 이

---

43) 실질 재배심사에 의해 보호요건을 갖출 경우 15년간 보호되며 세포용합에 의한 신품종도 보호한다.

후의 계속보호 여부의 경우, 각국에 위임하는 보호독립의 원칙과 가입 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호하는 소급주의 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UCC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들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약으로, 1952년에 체결되어 UNESCO에서 권장하고 있다.
- WCT(1996)와 WPPT(1996)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체결된 신조약으로, 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절한 저작권 보호<sup>44)</sup>를 위해 공중전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인터넷상에서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의 음악 저작인접권자를 보호<sup>45)</sup>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밖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정과 음반의 무단복제<sup>46)</sup>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협약<sup>47)</sup> 통신위성의 송신물 보호를 위한 브뤼셀협약 등이 있다.

#### 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미생물분야를 비롯한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Agreement)

---

44) 온라인상에서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과 디지털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45) 가수나 연주자의 작품을 CD나 레코드로 복제하는 행위, 배급 및 대여 등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6) 무단복제를 배포, 공중 배포의 목적으로 복제를 작성, 수입.

47) 로마협약과 제네바협약은 저작물을 실연하고 그 배포에 기여하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방안으로 체결되었다(로마협약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은 이 협약의 계속적인 적용을 위한 명시적 보장만을 담고 있을 뿐, 실제적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정도가 베른협약에 비해 상당부분 떨어진다).

과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설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체결된 워싱턴조약 (Washington Agreement) 등이 있다.

## 2)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비교

2007년 3월 현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은 [표 3-3]과 같다. 국제협약 가입현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우선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마드리드협정, 상표법조약, 로카르노협정 및 특허법조약 등 국제협약 가입 현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드리드협정과 로카르노협정은 중국만이, 그리고 상표법조약과 특허법조약은 한국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있어 한국과 중국은 로마협약과 WPPT(1996)에서 가입 현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마협약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미가입한 상태이며, 2007년 3월 중국이 WPPT(1996)에 가입함으로써 한국만이 미가입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워싱턴조약은 미발효 상태이며, 부다페스트조약은 한국과 중국 모두 가입한 상태이다.

이상의 양국간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중국이 상표법조약 미가입 상태라는 점과 우리나라가 WPPT(1996) 조약에 미가입 상태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문성(2003)에서는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상표법조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WPPT(1996) 조약 가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약 가입 여부의 차이가 추후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 WCT(1996), WPPT(1996) 등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한 상태나, 중국 내 우리나라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례<sup>48)</sup>가 끊이지 않고

48) 예컨대 '사이월드(www.cyworld.com)'의 경우 중국에서 운영되는 '에탕닷컴(www.etang.com)' 및 '하와(www.hawa.cn)'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한국에서 최고 인기게임으로 떠오른 넥슨의 '카트라이더'는 중국에서 '카트레이서'란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등 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표 3-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비교

	국제협약	체결 연도	한국 가입	중국 가입
산업 재산권	파리협약*	1883	1980	1985
	특허협력조약(PCT)**	1970	1984	1994
	마드리드협정**	1891	미가입	1989
	마드리드 의정서**	1989	2003	1995
	상표법조약(TLT)*	1994	2003	미가입
	니스협정***	1957	1999	1994
	UPOV*	1961	2002	1999
	로카르노협정***	1968	미가입	1996
	스트라스부르크협정***	1971	1999	1997
	특허법조약(PLT)*	2000	2000	미가입
저작권	베른협약*	1886	1996	1985
	세계저작권협약(UCC)*	1952	1984	1992
	로마협약*	1961	미가입	미가입
	WCT*	1996	2004	2007
	WPPT*	1996	미가입	2007
신지식 재산권	부다페스트협약**	1977	1988	1995
	워싱턴조약 (미발효)	1989	...	...

주: 1) \* 표준설정조약에, \*\* 국제보호시스템조약에, \*\*\*는 분류조약에 해당된다.

2) 협정은 convention을, 협약은 agreement를, 조약은 treaty를 의미한다.

자료: 이 근(2003); 강인수 외(2006) 참고.

있어 중국정부의 관련법 집행 여부가 추후 한·중 FTA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 1) 한국의 FTA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칠레, 싱가포르, EFTA)에서는 모두 지식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TRIPs 협정의 보호수준을 기준으로 크게 적극형(TRIPs 이상의 보호수준 설정), 보완형

([http://www.kiip.re.kr/common/common/file\\_download.asp?Tname=www\\_forum\\_data\\_tbl&No=61](http://www.kiip.re.kr/common/common/file_download.asp?Tname=www_forum_data_tbl&No=61)).

(TRIPs-plus 방식으로 TRIPs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토대로 추가적인 보호수준 설정), 소극형(별도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TRIPs 협정의 충실한 준수를 규정), 유도형(구체적인 규정 없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과 절차상의 협력에 중점)<sup>49)</sup>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나라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보완형에 가깝다. 이하에서는 기 체결된 3개의 FTA 협정의 지식재산권 조항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sup>50)</sup>

표 3-4. 우리나라 FTA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항 구성

	한·칠레 FTA (16장)	한·싱가포르 FTA (17장)	한·EFTA FTA (제7장)
제1조	의무	정의	지식재산의 보호
제2조	더 광범위한 보호	일반적 의무	지식재산의 범위 <sup>51)</sup>
제3조	상표의 보호	집행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
제4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보호 강화	
제5조	집행	지식재산 분야 협력	
제6조	협업체계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제7조		특허절차의 촉진	
제8조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제9조		지식재산 공동위원회 구성	

자료: 협정문 참고하여 저자 작성.

49) 대체로 미국이 체결한 FTA, 특히 미·싱가포르 FTA와 NAFTA는 적극형으로, 한·칠레 FTA 및 싱가포르·호주 FTA 등은 보완형으로 구분된다.

50) 한편 최근(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는 타결 직후 주요 쟁점별 협상결과가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알려졌다,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쟁점이 많아 협정문 본문이 공개되어야만 정확한 내용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1) 본 협정의 제7.2조에서는 '지식재산'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및 자료편집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식물다양성, 직접회로 배치설계와 미공개 정보를 지칭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가) 한·칠레 FTA

한·칠레 FTA는 지식재산권을 제16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이행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이행을 위한 보호조치가 정당한 교역에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을 의무화하였다(제16.1조). 또한 TRI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법에 근거해 동 협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제16.2조). 그리고 양국은 TRIPs 41조부터 61조에 합치하는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해 규정(제16.5조)하고, 제16장의 이행 혹은 해석과 관련한 당사국간 협의는 제19장에 언급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수행됨을 규정(제16.6조)하였다.

한편 한·칠레 FTA에서는 추가적인 보호 설정에 있어, 주로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집중하였다. 양국은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FTA를 통한 유명상표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고,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가 경제활동의 왜곡을 방지하고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제16.4조), 자국법에 따라 상대국에서 등록·보호되고 있고 TRIPs 협정 조항(제2장 3절 22조, 23조 및 24조)에 규정된 보호범위에 속하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이에 한국은 ‘인삼(Korean Ginseng)’, ‘김치(Korean Kimchi)’, ‘보성녹차(Boseong)’에 대해, 칠레는 포도주 및 증류수의 일종인 ‘Pisco’, ‘Pajarete’, ‘Vino Asoleado’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부속서 16.4.3 및 16.4.4).

### 나)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FTA는 제17장에서 지식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에서 양국은 TRIPs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의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7.2조). 또한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TRIPs와 합치하게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할 것을 규정하였다(제17.3조). 그리고 TRIPs의 허용범위 내에서 자국법에 근거해 동 협정이 요구하는 것

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제17.4조).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지식재산권 정책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훈련과 워크숍, 전시회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다(제17.5조).<sup>52)</sup> 또한 양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당사국 협력에 대한 검토·평가·권고 및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공동위원회’<sup>53)</sup>를 설립하기로 하였다(제17.9조).

한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싱가포르가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하고 특허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제17.7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이와 동일한 기술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실체심사 없이 특허권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다) 한·EFTA FTA

한·EFTA FTA는 지식재산권을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에서 한국과 EFTA 회원국들은 TRIPs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상대국의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제7.1조). 아울러 당사국들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정책과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교육훈련 증진 등 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제7.3조).

특허와 관련하여 한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는 TRIPs 규

52)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i)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국제특허절차의 편의 증진, (ii)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 활동 및 경험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iii) 특허 기술, 라이선싱 및 시장 정보, (iv)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증진, (v)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기술적 전문지식 및 지식의 교류(제17.5조 2항).

53) 제17.9조 1항에 ‘지식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에 대한 감독 및 검토, (ii)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 제공, (iii) 이 장에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iv) 지식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정상 특허예외사항에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해진 그러한 방법, 식물 또는 동물 변종,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조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부속서 XIII 제2조). 미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의 경우, 의약품 또는 농화학제품의 판매 허가를 위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부속서 XIII 제3조). 산업디자인과 지리적 표시는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기로 하였고,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한국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아이슬란드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지리적 표시의 상표보호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부속서 XIII 제5조).

## 2) 중국의 FTA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ASEAN 10개국(2005년 7월 1일 발효)과 칠레(2006년 7월 1일 발효), 파키스탄과 FTA(2006년 11월 24일 체결)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FTA 공식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지역)로는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그리고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국가(지역)로는 한국, 인도 등이 있다. 한편 중·ASEAN 및 중·칠레 FTA는 상품무역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포괄적인 FTA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FTA 협정문 내에서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없거나(중·ASEAN FTA, 중·파키스탄 FTA<sup>54)</sup>) 간략하게 언급(중·칠레 FTA)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칠레 FTA의 지식재산권 조항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54) 중·파키스탄 FTA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제3장(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의 제10조(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조치(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그리고 제15장(투자)에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 특허, 상표(상표명), 노하우, 영업권(good-will)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 가) 중·칠레 FTA

중·칠레 FTA 협정에서는 제3장(화물의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과 제13장(협력)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3장 10조에서는 TRIPs 협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1조(국경조치에 관한 특별 요구)에서는 가짜상표를 단 해적판 상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유통을 중지할 경우 수입국의 법규정에 의거하여 충분한 증거를 소관관청에 제공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이 합리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1항).

쌍방은 소관관청에 권한을 부여하여 피고측과 소관관청을 보호하고 출원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보증금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출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11조 2항). 또한 주관기관이 가짜 상표 혹은 해적판 화물로 정의내릴 시 일방은 소관관청에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요구에 응해 해주, 수입자의 이름, 화물인수자와 화물 수량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11조 3항).

제13장(협력) 111조는 ‘지식재산권 협력’과 관련된 조항으로 협력 목표와 협력 방식이라는 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협력 목표에서는 TRIPs 등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기술의 혁신·이전 및 전파를 통해 경제와 무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법집행에 있어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막는 등의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111조 1항). 구체적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쌍방의 동의와 사용 가능한 자금이 확보된다는 조건하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교육,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 다자간 포럼과 지역 포럼에서 언급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지, 집행기관 간 교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 및 법안 개정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111조 2항).

### 3) 한국과 중국의 FTA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비교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야 조항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FTA의 지재권 조항은 TRIPs-plus 방식의 보완형으로, TRIPs 관련 조항의 재확인과 함께 당사국간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유명상표 보호와 함께 TRIPs 협정의 보호 범위 내에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했으며, 한·EFTA FTA에서는 특허 예외조항과 함께 미공개정보 보호 규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는 교육훈련 및 인적 교류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 ‘지식재산권공동위원회’ 설립을 통한 양국의 지재권 협력 검토 및 강화가 특징적이다. 이는 칠레·캐나다 FTA나 싱가포르·뉴질랜드 FTA보다는 강화된 형태이나, 미국·싱가포르 FTA나 일본·칠레 FTA보다는 그 강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이 없거나, 간략하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중·호주 FTA의 타결 여부(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부록 2에 정리하였음)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호주 FTA의 타결 여부에 따라, 한·중 양국간 지식재산권 협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다음 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제4장

##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 이슈 점검

앞서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과 중국 모두 TRIPs가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소 수준을 표면적으로나마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사가 20여 년으로, 1980년대 초에는 지식재산권 관련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 중국이 TRIPs 규정에 거의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체제를 갖춘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의 법제도가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중국 내에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FTA의 실질적인 예비협상인 산·관·학 연구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중국 내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비하여 핵심 쟁점을 미리 검토해 보기로 한다.<sup>55)</sup>

## 1. 상표권 분야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신청이 활발한 편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3,219건(중국 내 신청 3,137건과 마드리드 신청 82건)이었으며, 등록건수는 1,302건(중국 내 등록건수 958건과 마드리드 등록건수 74건)이었다. 상표 등록신청 건수와 등록건수의 국가별 순위에서는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하였다.<sup>56)</sup>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기술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권리에 비해 우리 기업의 침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어,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에 있어 상표권 분야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선(先)출원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된 상표는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상표등록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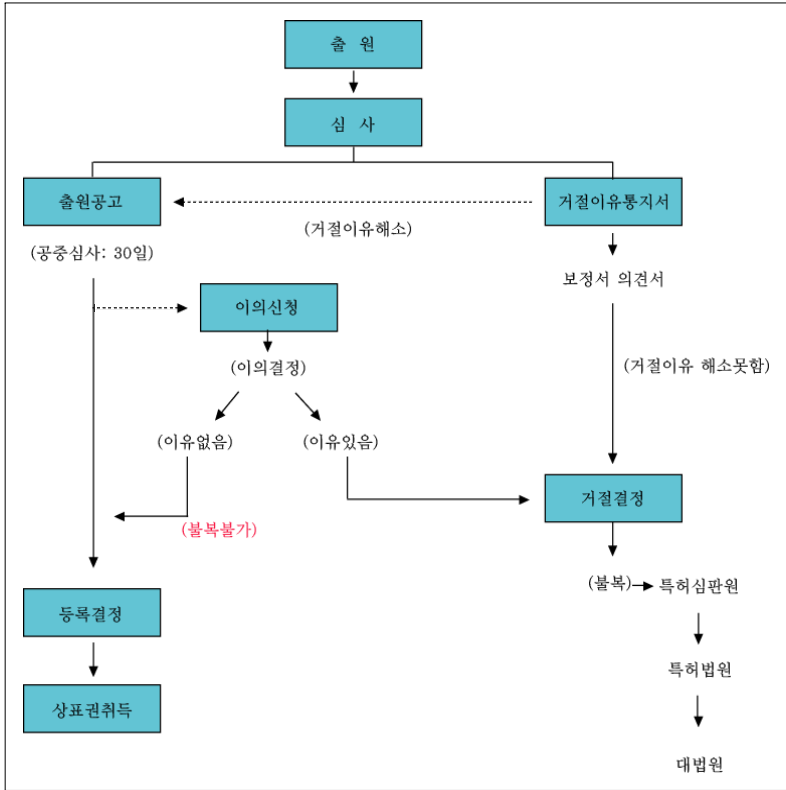
---

55)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주로 협상국 간 상이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도 양국간 지식재산권 법·제도 및 운영상 차이점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과 집행(enforcement)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은 유미특허법인의 김동균 변리사의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분야에 대한 이슈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저작권법이 1992년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1993년 제네바협약 가입, 그리고 2001년 TRIPs 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다수의 법규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체계를 확립하였으나, 저작권의 재산권적 보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낮아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작권 분야에서 부각될 이슈는 중국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 분야에 대한 이슈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다.

56) 마드리드 신청을 제외한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신청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등록신청 건수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등록건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 결정을 해야 한다. 이후 절차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4-1. 한국의 상표등록 ■



자료: 홈페이지(<http://www.namist.com/TieUp/tm/tm04.asp>) 참고로 저자 작성.

### 1) 이의신청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30일 이내, 중국에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의신청의 결정에 통상 3년이 소요되는데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재심절차(중국에서는 이를 복심이라고 함)를 거치게 되는데 재심에 3년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상표권 발생이 6~7년 정도 늦어지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상표권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에서 상표심사 시 이의가 제기되고 침해자가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등록(특히 신규상표 등록)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그림 4-1 참고).

## 2) 의견제출기회의 보장

우리나라에서는 출원결정에 대한 ‘거절’을 내리기 전 심사의견통지서를 통보하고,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의견서(그림 4-1의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의견제출 없이 ‘거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상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출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에서처럼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다면, 그 이후 조치로 인해 그만큼 상표권 등록이 지연되고 출원인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중국 내 상표권등록 지연이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표의 출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모조품 생산자들은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출원인은 타인의 모방행위에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등록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 중국의 이의신청기간(현행 90일),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 ‘거절’ 결정 전 출원인의 의견제출기회 미보장 등 관련 쟁점에 대한 한·중 양국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출원 중인 상표의 보호

우리나라에서는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이러한 보호는 특허권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등록받지 못한 출원상표의 경우 그 등록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상품출시와 사업개시 즈음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때문에 등록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상 제24조 제1항에 의거,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출원 공고 후 상표권을 설정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 사용에 의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의 관리는 등록된 이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형성 과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출원 중인 상표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다. 유명상표 보호

우리나라의 현행 상표법상(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점은 ‘국외’라는 부분으로, 국내에서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유명하기만 하면, 그 상표는 한국에서 보호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유명상표(중국에서는

이를 저명상표(馳名商標)라고 함)에 대해 “중국에서 관련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sup>57)</sup> 이러한 개념에서 주목할 점은 저명상표의 판단 주체가 중국의 공중(公衆), 즉 중국의 수요자라는 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해석한다면 국외에서 상표의 주지 정도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유명하면 보호하고 중국에서 유명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유명하지만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보호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의장(디자인) 분야

사회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의 종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직물디자인, 패션디자인, 건축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광고일러스트레이션, 포장디자인, 기계류디자인 등이 디자인 범주에 포함된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각 특색에 따라 보호기간, 보호방법, 보호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디자인산업의 발달이 디자인권의 보호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상표권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중국의 디자인 보호이다. 특히 상표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디자인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sup>58)</sup>과 더불어 중국의 법·제도상의 미흡한 점이 있음에 주목해야

57) 馳名商標認定和保护規定 제2조. 한편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각 기준별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저명상표의 인정기준은 ① 관련공중이 해당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②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한 시간(상표 사용 및 등록 역사), ③ 해당 상표의 광고를 계속한 기간, 정도와 지리범위, 해당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④ 해당 상표의 기타 저명한 요소(해당 상표를 사용한 주요상품의 최근 3년간 생산량·판매량·판매수입·이윤 및 납부세액·판매지역 등)임.

58) 지난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특허청과 KOTRA가 국내의 중국수출기업과 중국 진출기업을 상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부분의장 보호

2001년 7월에 시행된 의장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볼펜의 클립부분, 승용차의 라이트 부분 등 물품의 부분에 독창성이 높은 창작을 한 경우, 그 부분을 보호토록 하여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부분의장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컨대, 한국 차의 앞부분을 중국 업체가 고스란히 모방하더라도 뒷부분 디자인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는 의장등록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부분의장 보호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나. 미등록의장 보호

디자인의 모방에 관하여 최선책은 신속한 의장권 획득을 통한 의장의 조기 보호, 조기 권리화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의장법상 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매일로부터 단시일 내 발생하는 모방과 도용에 대해서는 의장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에 특별 규정을 두어 새로 개발된 디자인에 한해 3년간 등록 없이 모방품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

실시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현지기업은 상표(44.3%), 디자인(26.1%), 특허·실용신안(12.5%) 순으로 조사됨(특허청 뉴스, 2006년 9월 28일자 참고).

중국에서의 디자인출원은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출원에서 등록까지 8개월 가량 소요<sup>59)</sup>되고 있어, 디자인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등록되기 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와 같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휴대폰의 경우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는 점차 짧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대략 3개월이면 우리나라에서 새로 개발된 휴대폰 제품의 모방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등록의장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관련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다. 보호기간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기간은 등록 후 15년간이나, 중국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다.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상표권과 달리, 디자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보호되므로 양국의 보호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 3. 특허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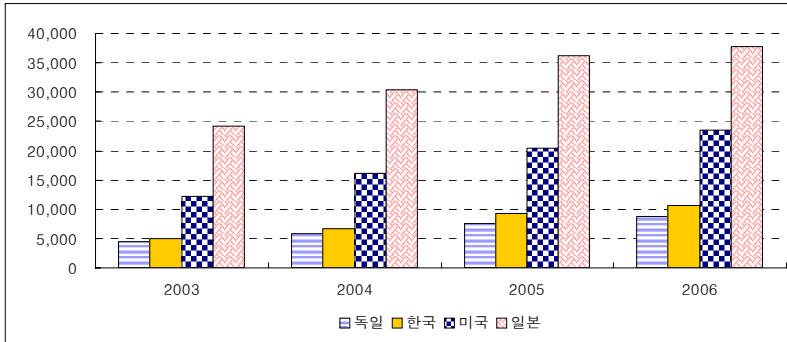
200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 약 6만 3,000건이던 특허출원이 2004년에는 약 13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장차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에서 권리 확보에

---

59) 특허청(2005, p. 24) 참고.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특허(전리) 출원<sup>60)</sup> 현황으로 볼 때, 출원건수 기준으로 2003~2006년 동안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4-2 참고).

▮ 그림 4-2. 국가별 중국 특허출원 현황 ▮



자료: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

중국의 특허제도는 20년도 안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보호 원칙과 그 수준은 TRIPs 협정과 파리협약, PCT 및 부다페스트조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특허제도와 우리의 특허제도를 비교하였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한정적이며, 이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60) 중국의 전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의 총칭이며, 중국의 '전리'와 우리가 사용하는 '특허'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 가. 등록요건: 신규성상실 요건

특허의 등록요건인 ‘신규성’<sup>61)</sup>에 있어, 우리나라 현행 특허법상에서는 신규성상실 사유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출원 전에 국내 혹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들어 이에 해당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공연실시’ 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3월 개정 전까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규정하여 국내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공연실시’에 있어 여전히 국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공연실시’에 대한 국제주의 채택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 4. 집행(Enforcement)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명목상의 법률보다는 실제 집행정도가 실질적인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실제 집행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이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의 집행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들 논의를 중심으로 한·중 FTA에서의 집행 관련 예상 이슈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61)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그것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는 ① 발명의 성립,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③ 신규성, ④ 진보성, ⑤ 현행법상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에만 부여된다.

##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WTO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바로 집행측면에 있어 중국의 TRIPs 협정 의무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USTR의 NTE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 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집행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성, 지역보호주의 및 부정부패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고 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글상자 4-1 참고). 특히 일본은 TRIPs 이사회에 제출된 의사록에서 중국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입장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USTR은 2003년 중국의 WTO 이행보고서에서 중국정부의 정기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첫째, 매우 낮은 벌금 수준(벌금이 모조품 및 해적판의 정품 가격이 아닌 침해품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벌금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침해의 피해규모 및 벌금수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팔리지 않은 모조품은 제외하고, 이미 팔린 모조품 중 침해자가 판매량을 기록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점 등이 지적됨), 둘째, 행정집행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거론하였다. 또한 중국의 형사집행이 침해억제책으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형사처벌의 기소표준이 높아 통상 기소표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62)</sup> 한편

62) Stewart(2005, p. 183) 참고.

2007년 미국의 NTE 보고서에서는 형사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첫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상업적 의도가 있음을 형사처벌의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the profit motive requirement in copyright cases), 둘째, 범죄행위가 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조사 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 등을 추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내 모조품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정부의 정기적인 침해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의약품, 정보기술, 의류, 섬유, 신발, 기타 소비재, 음식, 음료, 전자기계 및 자동차 부품, 기타 산업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모조품 및 해적판이 생산되고 있어 교역 상대국의 상품, 브랜드 및 기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 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조품의 조작성과 품질문제는 국내기업의 공신력과 우리 제품의 평판저하 및 판매감소로 이어지므로, 이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국의 행정 및 형사 집행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 글상자 4-1.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특징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sup>63)</sup>의 이원화된 보호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당한 권리자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보호체계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민사적 해결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 ‘국가중심적’인 행정적 보호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보호체제로 인해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관련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적 보호를 통한 행정 처리나 심사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혹은 일방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적 보호절차로 재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행위와 같은 민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이로 인한 선택적인 법 집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법집행에 따른 부정·부패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성립 초기부터 지방분권적 경제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어 중앙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 간 경제발전 수준이 달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R&D 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며, 일부 경제발전이 더딘 지방의 경우 GDP 성장을 위해 정부가 위조품 생산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기도 한다.

63) 행정적 보호는 상표권 분야의 경우 상표국 혹은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전리(특허) 분야의 경우 국가지식산업국에서, 저작권 분야의 경우 국가판권국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정지명령이나 위법소득의 몰수, 권리침해에 관련된 상품 및 도구의 몰수,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적 보호는 사법기관인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당한 권리자의 민사적인 청구를 심리 판단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인민검찰원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담당한다. 통상 사법적 구제는 민사적 구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민검찰원에 의한 형사적 제재조치는 형사적 구제라 일컫는다. 사법적 보호의 경우 침해행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체소전 중지, 재산보전 및 증거보전의 제도를 이용가능하나, 절차가 어렵고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도 행정적 보호절차가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5장

---

## 결론

최근 FTA 체결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양자간 혹은 복수국가 간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협정마다 그 보호 수준의 조화나 통일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만큼, 기술혁신 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협상에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류 열풍과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모조품의 유통 등 중국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조작성 및 품질 문제는 우리 기업의 국제적 공신력과 우리 제품에 대한 평판저하 및 판매수익률 감소 등으로 이어져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감안한다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논의될 중국과의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는 침해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간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중국의 이의신청기간(현행 90일),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점, ‘거절’ 결정 전에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 등 중국 내 상표권 등록 지연과 관련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 출원 중인 상표의 미보호 문제와 유명상표 보호의 한계점(국외에서는 유명하지만 중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는 상표는 보호되지 않음)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둘째, 의장(디자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부분의장·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상대적으로 짧은 중국의 디자인 보호기간(현행 출원일로부터 10년) 연장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이다. 셋째, 특허는 등록요건 중 신규성상실 요건에 있어 중국 측이 ‘공연실시’ 규정에 대해 여전히 국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집행 분야에서는 중국의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 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 집행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성, 지역보호주의 및 부정·부패와 더불어 취약한 중국의 행정구제 및 형사구제(낮은 벌금, 높은 기소표준 등)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FTA 협상은 지식재산권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와 다른 분야 간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국 간 언어낼 것과 양보할 것이 정해지며, 같은 분야 내에서도 여러 쟁점사항들 가운데 언어낼 것과 양보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한·중 FTA 협상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협상 체결 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 측에 언어낼 수 있는 분야 및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국제적 공신력 확보와 우리 제품에 대한 평판유지 및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절

대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과의 FTA에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는 분명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이슈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 국문 자료

- 강인수 외. 2006. 『국제통상론』. 박영사.
- 강호진 외. 2006. 「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한국의 수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pp. 5~31.
- 김종보. 2005. 「지적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헌법이념상 저작권 개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pp. 89~121.
- 김혜준. 2005. 「한류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 영화분야 재산권 침해 사례」. 전경련 세미나 발표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06. 「국내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조사」.
-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http://www.mct.go.kr/index.jsp>
- 박월라 외. 2006.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 근. 2003. 「지식재산권」.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길. 2005a. 「문화컨텐츠산업에서의 분쟁특성과 분쟁실태」. 전경련 세미나 발표자료.
- \_\_\_\_\_. 2005b. 「한류 콘텐츠 피해사례: 중국에서의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전경련 세미나 발표자료.
- 이장규 외.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근엽 외. 2005.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한국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1호, pp. 19~42.
- 은종학. 2004.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 문제점, 구조적 원인, 정책적 함의」. 『지식재산논단』, 제1권 제2호, pp. 74~98.
- 장동식. 2006.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pp. 197~222.
- 장덕배. 2005a. 「중국 상표제도 개요: 상표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특허청.  
 \_\_\_\_\_. 2005b. 「중국 특허제도 개요」. 특허청.
- 정상조. 2000. 「통상문제로서의 지식재산권」. 『통상법률』. 법무부.
- 정성창. 2005. 『지식재산전쟁』. 삼성경제연구소.
- 조영정. 2003.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 최홍배. 2000. 「WTO/TRIPs 협정에 의한 특허의 국제적 보호문제」. 『한국국제통상학회』, 제5권, 제2호, pp. 171~195.
- 특허청. 1997. 『지적재산권총론』.  
 \_\_\_\_\_. 2004. 「특허분쟁사례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관리 가이드북』.  
 \_\_\_\_\_. 2005.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_\_\_\_\_. 2006. 『지식재산백서』.  
 \_\_\_\_\_. 지적재산권 관련법. <http://www.kipo.go.kr>
- 한국무역협회. 2005. 『한류 국가의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6. 「우리 섬유·패션기업의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현황과 대응방안」. 『중국 이슈리포트』, 제42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a.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_\_\_\_\_. 2006b. 『효율적인 지재권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http://copi.kipo.go.kr>

● ● 외국문 자료

[중문 자료]

- 商务部新闻办公室. 2007. 「2006年中国保护知识产权取得新进展」(1月 25日).  
中国网. 2006. 「2006年中国保护知识产权行动计划(全文)及说明」(5月 25日).  
中国国家知识产权局. <http://www.sipo.gov.cn/sipo>  
趁 放. 2006. 「从中美知识产权冲突看中国知识产权战略」. 『财经问题研究』, 第10期.

[영문 자료]

- EIU. 2006. "South Korea: Licens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ViewsWire.  
Fink, C. and K. Maskus eds. 2005. *IP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recent economic research*. World Bank.  
Gould, David M. 1996.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8, pp. 323-350.  
Gould, David M. and William C. Gruben. 1996.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conomic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8, pp. 323-350.  
Helpman, E. 1993. "Innovation, Imit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conometrica*, vol. 6, no. 6, pp. 1247-1280.  
Mansfield, Edwin. 1994.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IFC Discussion Paper 19.  
\_\_\_\_\_. 2000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IES Policy Discussion Paper.  
\_\_\_\_\_. 2000b.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lobal Economy*.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skus, Keith E. 1997. "Implications of Region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orld Economy*, vol. 20, no. 5.
- Maskus, Keith E. and Mohan Penubarti. 1995. “How Trade-Related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9, pp. 227-248.
- OECD. 2002a.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_\_\_\_\_. 2002b. *The Impact of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_\_\_\_\_. 2005. *Governance in China*.
- Schneider, Patricia H. 2005.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Growth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Panel Data Study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78, pp. 529-547.
- Smarzynska, Beata, K. 2000. “Compos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vidence from Transition Economics.”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2786.
- Smith, Pamela. J. 1999. “Are Weak Patent Rights a Barrier to U.S. Expor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8. pp. 151-177.
- Special 301 Report. 2006. “Priority Watch List.”
- Stewart, Terance P. 2005. *China’s Compliance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Obligations: A Review of China’s First Two Years of Membership*. Transnational Pub.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Several years.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WTO. 2004. *Trade Policy Review*.
- Zhang, Gang. 2005. “Promoting IPR Policy and Enforcement in China.” STI Working Paper.

# 부록

##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한국	중국
상표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등록후 10년간 유효하며, 매 연장등록 존속기간은 10년으로 연장등록출원은 심사후 공고
특허	-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 발명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 -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의장 (디자인)	등록 후 15년간 보호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

자료: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저작권	특허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권리가 국가관권국과 성, 지방자치지구의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li> <li>-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있어 아이디어(ideas), 절차(processes), 운영방법(methods of operation), 수학적 개념(mathematical concepts)과 소프트웨어를 발전하는 데 사용된 다른 방법 등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특허법상 예외적용 범위가 호주보다 넓다는 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간 협조 부족: 지식재산권 침해자의 기소지연</li> <li>- 일관성 없는 보상 (the inconsistent award of damages)</li> <li>- 침해억제책으로의 취약함 (Weak deterrence):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적음; 행정·사법·법집행 기관이 지방정부 관할하에 있어 침해행위에 대해 고의적으로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음; 형사처벌의 높은 기소표준 (high thresholds for criminal prosecution)</li> <li>- 사법부 독립: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판관의 승진과 평판이 지방행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임</li> <li>- 법원 내 전문인력 부족</li> </ul>

자료: 호주상공회의소에서 2006년 1월 발간한 *China FTA-Need for Pro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TRIPs 내용의 요약<sup>64)</sup>

#### 가. TRIPs의 일반규정

- ① 일반원칙: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 ② 다른 협정의 준용<sup>65)</sup>
- ③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sup>66)</sup>

#### 나. 실체적 규정

이에 대한 TRIPs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문학, 예술 창작물 외에도 2차적 저작물, 응용예술저작물 및 의장, 외국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사망일 경우 권리자 사망 후 50년까지이며, 권리자가 없거나 법인일 경우 창작 후 50년으로 한다. 음반 및 공연가(performers) 등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으로는 음반, 공연가의 경우는 제작, 공연일로부터 50년,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일로부터 2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64) 이 근(200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해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다음 홈페이지 참고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intel2\\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intel2_e.htm)).

65) 각주 8) 참고.

66) 권리소진의 원칙은 'First-sale Doctrine'이라고도 하는데, 원권리자가 적법하게 만들어진 복제본(특허물품 포함)을 일단 판매하면 이를 매수한 복제본의 권리자는 원권리자의 독점적인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적용 시 병행수입(parallel import)과 대여권이 문제가 된다. 병행수입은 권리자 이외의 국가에게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복제된 특허상품, 저작물, 상표부착물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가리킨다.

## 2) 상표의 보호

이름, 문자, 숫자, 도형, 색채의 조합, 그리고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징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는 보호한다.<sup>67)</sup> 보호기간은 최소 7년으로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 3)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혹은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보호의 방법은 타인에 의한 무단사용을 금지하며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타인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 혹은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 4) 의장

새롭거나 독창적으로 창작된 의장의 보호를 규정한다. 보호기간은 최소 10년이다.

## 5) 특허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상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물질 혹은 제품에 관한 발명이 보호대상<sup>68)</sup>으로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이다.

## 6)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그 자체는 물론 보호대상이 되는 배치설계를 결합한

---

67) 유명상표의 경우 상표의 유명성 여부는 상표사용의 증대로 인해 얻어진 지식 및 해당 회원국의 관련 업계에 알려진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개별국의 국내법에 맡기고 있다.

68) 한편 다음은 특허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① 공서양속, 공중보건, 환경보호에 위반되는 발명, ② 진단, 수술 및 처치방법, ③ 식물 및 동물발명.

집적회로가 보호대상으로, 보호기간은 출원일 혹은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호하되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외에 불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미공개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 다. 집행절차

### 1) 민사 및 행정절차

#### 가) 증거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으로 취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상대방의 관할에 있는 것을 소명한 경우,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조건하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증거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나) 금지명령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에게 침해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특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상품이 통관 직후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sup>69)</sup>

#### 다) 손해배상

사법당국은 지적재산권의 침해자가 권리소유자에게 지적재산권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배상을 하고, 권리소유자의 소송비용까지 침해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69) 다만 당해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는 사실을 알기 이전 또는 동 사실을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이전에 특정인에 의해 취득 혹은 주문된 보호받는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 라) 기타구제

권리침해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사법당국은 침해상품 또는 침해상품을 제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물건, 기구 등을 보상없이 압수하고 현행 헌법조항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침해물품의 폐기가 가능하다.

## 마) 정보권

사법당국이 침해의 심각성과의 균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침해자에게 침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및 배포에 관여한 제조자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유통체계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 2) 잠정조치

사법당국은 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특히 통관직후의 수입품을 포함한 침해상품이 자신의 관할권 내의 상거래로 유입되는 것의 방지, ② 침해와 관련된 증거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3) 국경조치

위조상품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고, 위조상품 유통 방지의 핵심은 위조상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세관당국에 의한 통관정지

두 회원국은 권리자가 행정 또는 사법관할기관에 서면으로 상표권 위조상품 및 저작권 침해상품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해 세관에 의한 통관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신청

권리소유자는 세관당국에 통관정지요청을 할 때 수입국 법률에 의거하여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해야 하고, 세관당국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침해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예치금 또는 공탁금

본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관정지 요청자는 세관당국에 예치금 또는 공탁금을 기탁해야 한다. 또한 의장, 특허,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본 조치가 사법당국이나 기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관당국에 의해 내려진 경우 해당상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상품의 수탁자 등은 권리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할만한 금액을 예치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 라) 통관정지기간

통관정지조치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피고가 아닌 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통관정지기간을 연장하는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음이 세관에 통보되지 않는 한 해당상품은 통관되어야 한다.

## 마)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통관정지 요청자가 잘못된 요청으로 수입업자, 상품수탁자 및 해당 상품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통관정지 요청자는 그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 바) 직권조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관할기관은 직권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회원국은 선의로 취해지거나 의도된 적절한 구제조치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 사) 최소 허용 수입량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된 소량상품이나 소량의 탁송상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경우에 대해서는 본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형사절차

회원국은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마련하여야 한다. 처벌은 유사한 죄질을 가진 다른 범죄와 처벌수준에 있어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구금 또는 벌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라. 분쟁해결절차

##### 1) 투명성

지적재산권의 이용가능성, 범위, 획득, 시행 및 남용방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및 행정·사법적인 결정 등은 공개·발간되어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제 등을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에 통보해야 한다.

##### 2) 분쟁해결절차

TRIPs에 관련된 분쟁은 TRIPs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GATT 제22조, 제23조 및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각서(DSU)에 의하여 처리된다.

## ■ ■ Executive Summary

# IPR Related Issues in Korea-China FTA

Mee Jin Cho, Boo Young Eom, Hyunjung Park

---

In recent years, China has undertaken substantial efforts to increas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reduction in IPR infringement levels.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China cause economic harm to Korean business in many sectors and have an overall negative effect on our consumers, businesses, and economy. In this situation, if a negotiation for an FTA between Korea and China begins,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IPR-related issues will be critica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PR in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PR protection system for both countries, and reviews the expected issues.

# KIEP 발간자료목록 (2006~07. 11)

## ■ 연구보고서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종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해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예너  
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Policy Analyses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6-01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 Chang Jae Lee *et al.*
- 06-02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 on East Asian Economies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3 동북아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외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해정

■ 정책자료

- 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 이창수 · 김민성 · 윤창인 · 김진오

- 06-02 몽골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 정재완·유민우
-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 신현준
- 06-04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 여지나
- 06-05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 정성춘·이형근
- 06-06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 Yung Chul Park and Doo Yong Yang

■ 지역연구

-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 제도적 접근 / 김세원·박명호·김흥종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알제리·나이지리아/ 박복영·황주성·박철형
-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 Won-hwa Park, Heungchong Kim, and Linda MADUZ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Working Papers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 Zhang Jianping

■ 단행본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자 약력

---

## 조미진(趙美眞)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mcho@kiep.go.kr)

### 저서 및 논문

『Essays o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2001)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2007)

## 엄부영(嚴富暎)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IUHEI 국제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byum@kiep.go.kr)

### 저서 및 논문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공저, 2004)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2005) 외

## 박현정(朴炫貞)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hjpark@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 제11차 5개년계획 건의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05)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외자기업의 전략』 (공저, 2006)  
『외자기업 영향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정책 전망』 (2006)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